

시 민

문서번호	인력개발과-28101
결재일자	2022. 8. 1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
방침번호	행정1부시장 제186호

주무관	인재노무팀장	인력개발과장	행정국장	행정1부시장
				08/01
협 조	인사과장			

2023년도 장기국외훈련 운영 계획

2022. 08.

행 정 국
(인 력 개 발 과)

2023년 장기국외훈련 운영 계획

글로벌 'TOP 5 도시' 도약을 선도할 외국어 의사소통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'23년도 장기국외훈련 운영 계획임

1 사업개요(훈련현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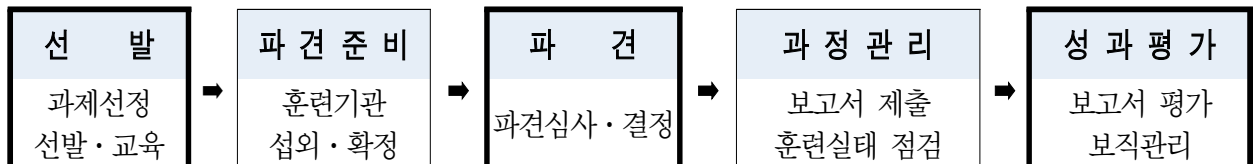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○ 추진근거

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0조~제37조
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」 및 「서울시 국외훈련 운영규정」

○ 훈련유형 : 학위과정(2년), 직무훈련(1~2년), 특별정책과정(1년)

○ 추진과정 : 3~4년 소요



○ '22년 선발 결과 : 총 31명(학위 12명, 직무 19명)

- 3급 이상(4명, 별도 선발), 4급(6명), 5급 이하(21명)

○ 예산('22년) : 3,649백만원

□ 훈련현황('22.7.28. 현재)

(단위 : 명)

구분	계	국장급	4급	5급	6급 이하
합계	54	8	9	18	19
학위과정	24	-	3	13	8
직무과정	21	8	6	1	6
특별정책과정	9	-	-	4	5

2

'23년도 국외훈련 운영방향

□ 추진 목표

- '글로벌 TOP 5 도시' 도약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
- 우리 시 발전 경험을 **개도국 도시에 전파**하여 서울의 국제위상 제고
- 해외 훈련기관 파견, 정책교류를 통한 **국제 네트워크 확대** 및 협력 강화

□ 운영 방향

- 다양한 국제교류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**훈련국가 지속적 다변화**
- 해외정부·국제기구 등 실무중심 직무훈련 기관 지속 파견
- 훈련과정 및 사후관리 강화로 **훈련성과 및 시정기여도 제고**

□ 선발 개요

- 선발인원 : 총 37명(3급 이상 4, 4급 7, 5급 이하 26)
 - 학위과정 : 10명(5급 5, 6급 이하 5)
 - 직무과정 : 27명(3급 4, 4급 일반직무 7, 특별정책 11, 지정기관직무 5)
 - ▶ 일반직무 : 11명(3급 이상 4, 4급 7) ※ 3급 이상 4명 별도 선발, 4급의 경우 학위 신청자 우선 선발
 - ▶ 특별정책 : 11명(5급 이하)
 - ✓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4(공공행정 2, 사회복지 2), 영국 버밍엄대(사회과학대학원) 3, 싱가포르국립대(리관유스쿨) 2, 중국 대외경제무역대(국제학원, '23년 신규) 2
 - ▶ 지정기관직무 : 5명(5급 이하)
 - ✓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청, 일본 요코하마시청, 독일 ICLEI(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), 인도네시아 UCLG-ASPAC(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부), 모로코 UCLG-AFRICA(세계지방정부연합 아프리카 지부, '23년 신규)
- 지원자격 : **7급 이상 경력직공무원**으로 '22.12.31. 기준 만 50세 이하('21.1. 이후 출생), **실제 근무경력 3년 이상 및 市 전입 2년 이상** ※국장급(만 53세)
- 선발방법 : 평가점수를 기초로 서울시 국외훈련심의회 심의를 통해 **훈련 분야별 경쟁 선발**
- 훈련기간 : 2년 이내(단, 특별정책과정 1년 원칙)

□ 주요 변경내용

① (훈련기관) 영·미권 편중 완화 및 훈련국가 다변화를 위한 비영어권 2개 훈련기관(아프리카 모로코 및 중국 소재) 신규 발굴

- '23년 지정기관직무(2년) 훈련기관(5개 기관 총 5명)
 - ✓ 기존 훈련기관(4개, 4명) : 샌프란시스코시청(미국), 요코하마 시청(일본), ICLEI 본부(독일), UCLG-ASPAC(인도네시아)
 - ✓ 신규 훈련기관(1개, 1명, 1+1년) : UCLG-AFRICA*(모로코)(세계지방정부연합(UCLG) 아프리카 지부)
*모로코 라바트 시(수도) 소재, 세계지방정부연합(UCLG) 7개 지부 중 하나, 아프리카 회원도시 대상 교육훈련 실시
- '23년 특별정책과정(1년) 훈련기관(4개 기관 총 11명)
 - ✓ 기존 훈련기관(3개, 9명) : 포틀랜드주립대 4명(미국), 버밍엄대 3명(영국), 싱가포르국립대 2명(싱가포르)
 - ✓ 신규 훈련기관(1개, 2명) : 대외경제무역대 2명(중국)

② (선발) 국외훈련에 필요한 어학능력 요건 및 검증 강화

구분		변경	비고
외국어 말하기 시험(OPIC)	신청 자격요건 설정	(당초) 신청 자격 요건 없음 (변경) IM1(중급 1) 이상	
	환산점수 세분화	(당초) 환산점수 AL/ IH 모두 15점 (변경) 환산점수 세분화 →AL 15점, IH 14점	
원어민 영어 면접 전 과정 확대(5급 이하)		(당초) 지정기관 직무('21)과정에만 실시 (변경) 특별정책과정 및 학위과정으로 확대	

※ (참고) 외국어 말하기시험(OPIC) 환산점수 변경

구분(영어)	환산점수		비고
	변경 전	변경 후	
Advanced(고급) Low(AL)	15점	15점	
Intermediate(중급) High(IH)		14점	
Intermediate(중급) Mid3(IM3)	14점	13점	지정기관직무 선발 요건
Intermediate(중급) Mid2(IM2)	13점	12점	
Intermediate(중급) Mid1(IM1)	12점	11점(신청 하한요건)	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선발 요건('20~, IM1 이상) 반영
Intermediate(중급) Low(IL)	10점	신청 제한	
Novice(초급) High(NH)	8점		
Novice(초급) Mid(NM)	6점		
Novice(초급) Low(NL)	5점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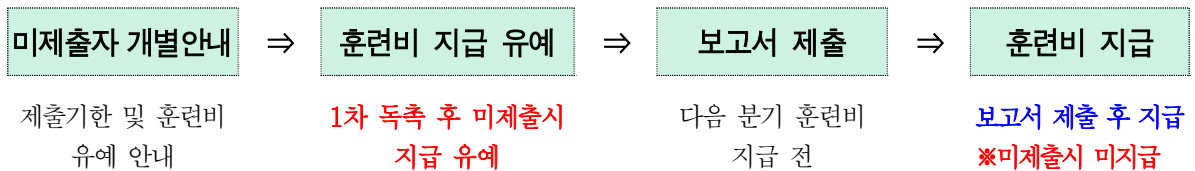
③ (과정 및 사후관리) ‘연구과제 보고서’ 표절검사 실시 및 보고서 대시민 공개, ‘훈련성과 보고서’ 관련 표절검사 및 환수 기준 강화

- 훈련 중 제출(연 1회)하는 ‘연구과제 보고서’ 에 대한 표절검사(허용률 15% 미만) 실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대시민 공개

※ 훈련 중 제출 보고서, 제출시기 및 분량

보고서명	제출시기	분량
①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서	파견 후 3월 이내 (훈련 중 1회)	5쪽 이상 (13 point, 줄 간격 160%)
②훈련진행 상황보고서	* 학위과정 : 매학기 종료 후 * 직무과정 : 분기별 1회	
③연구과제 보고서 (표절 검사 실시 및 대시민 공개)(신규) ※표절 허용률 : 15% 미만	연 1회 * 학위과정의 경우 최초 1회(파견 후 1년 이내)만 제출	30쪽 이상 (13 point, 줄 간격 160%)
④시정반영 우수정책 사례	* 학위과정(2년) : 8회 * 일반직무과정(2년) : 20회 * 지정기관직무 : 분기별 1회	3쪽 이상 (13 point, 줄 간격 160%)
⑤훈련성과 보고서 (표절검사 실시 및 대시민 공개) ※표절 허용률 : 15% 미만	훈련 복귀 전	50쪽 이상 (13 point, 줄 간격 160%)

- 훈련 중 ‘각종 보고서 미제출자’ 에 대한 훈련비(체재비) 지급 제한을 통한 관리강화



- 훈련성과 보고서 표절검사 강화

- ✓ 표절 기준 : 표절률 15% 이상인 경우
- ✓ 검사 방법 : 표절검사 프로그램*을 통한 검사 *카피킬러 : 60억 건 이상의 문서와 비교검사
- ✓ 표절률 15% 이상 훈련성과 보고서 보완 조치 : 보완통보 후 1개월 이내

- 훈련성과 보고서 관련 환수 기준 강화

구분	환수 기준	비고
복귀 전 훈련성과 보고서 미제출	기 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	
다른 연구보고서·논문 등 표절	기 지급된 월 체재비의 2배 환수 *표절을 15% 이상인 경우 1개월 보완 기간 부여	
파견 종료 후 6개월 경과(미제출)	기 지급된 총 훈련비의 10% 환수	
파견 종료 후 1년 경과(미제출)	기 지급된 총 훈련비의 10% 추가 환수	

④ (휴직금지) 국외훈련의 시정성과 제고 및 국외훈련 내실화를 위해 **훈련 종료 후 현지 체류연장 목적의 휴직 금지**

- 파견 전 ‘현지 체류연장 목적의 휴직금지에 대한 서약서’ 제출 의무화
※ 장기국외훈련 복귀자 중 휴직자 현황('17~'21년) : 복귀자 총 168명 중 15명(약 9%)

⑤ 기타

- **지연귀국 금지** : **훈련 종료 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귀국**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로 귀국이 지연될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해 사전 승인
※ **파견기간 전 미리 출국의 경우도 사전 승인 필요**(출국일=파견 시작일, 조기출국 금지)
- (이중 지원 고려) 국내 대학(대학원) 위탁교육 훈련 중인 자(의무복무 중인 자 포함) 장기국외훈련 학위과정 선발 제한
- 훈련성과 보고서 평가 개선
 - ✓ 서울시립대 및 서울연구원을 제외한 외부 평가위원 70% 이상 위촉
 - ✓ 훈련성과 보고서 1건당 복수(2인)의 외부 평가위원에게 평가 의뢰

《 **인력개발과 주관 OPIc 시험 폐지 사전예고** 》

- ◆ '21.4.30.부터 외국어 가점에 OPIc 시험 추가 및 개인별 특별시험 응시 가능(시험 응시료는 정기 응시료의 40% 수준) 여건을 고려, 장기국외훈련자 선발을 위한 **인력개발과 주관 OPIc 시험은 '22년까지만 실시하고, '23년 선발부터 폐지**
- ※ '23년부터 개인별 응시 및 OPIc 어학성적 사본 제출(선발 연도말 기준 1년 이내 어학성적에 한함)

□ 주요 변경 내용

구 분	주요 변경 내용	비고
<p>훈련국가 다변화</p>	<p>✓ 비영어권 훈련국가 신규 발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아프리카 지정직무기관(1+1년) 신규 발굴(UCLG-AFRICA,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프리카 지부) *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국제학원 특별정책과정(1년) 신규 개설 	
<p>선발</p>	<p>✓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위한 영어 면접(5급 이하) 확대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존 : 지정기관직무 * 확대 : 지정기관직무 + 학위과정 + 특별정책과정 <p>✓ 외국어 말하기(OPIc) 시험 관련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청 자격요건 하한 설정(IM1 이상) * 환산점수 세분화 : AL(15점), IH(14점), IM3(13점), IM2(12점), IM1(11점) * (사전예고) '23년 선발 시부터 인력개발과 주관 OPIc 시험 폐지, 개인별 응시 <p>✓ 국내 대학(대학원) 위탁교육 훈련 중인 자(의무복무 중인 자 포함) 장기국외훈련 학위과정 선발 제한</p>	
<p>과정관리</p>	<p>✓ 표절 사전예방을 위해 훈련 중 '연구과제 보고서' 표절검사 실시 및 보고서 대시민 공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존 : (최종) 훈련성과 보고서 표절검사 실시 및 대시민 공개 * 확대 : (최종) 훈련성과 보고서 + 연구과제 보고서 <p>✓ 훈련 중 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훈련비(체재비) 지급 제한 강화</p> <p>✓ 학위과정자 부담 경감을 위해 '2차 연구과제 보고서' 제출의무 폐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파견 후 '최초 1회'만 제출 	
<p>사후관리</p>	<p>✓ 훈련종료 후 불가피한 사유로 귀국 지연 시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해 사전 승인 ※ 원칙적 지연귀국 금지</p> <p>✓ 훈련성과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훈련비 환수 기준 강화</p> <p>✓ 훈련성과 보고서 평가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서울시립대 및 서울연구원을 제외한 외부 평가위원 70% 이상 위촉 * 훈련성과 보고서 1건당 복수(2인)의 외부 평가위원에게 평가 의뢰 	
<p>기타</p>	<p>✓ 훈련 성과 제고를 위해 국외훈련 종료 후 현지 체류 연장 목적의 휴직 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파견 전 '현지 체류연장 목적의 휴직금지에 대한 서약서' 제출 의무화 	

□ 추진일정

구 분	일 정	주 요 내 용	비고
모 집			
신청서 접수	8.29. ~ 8.31.	▸ 실·본부국 ⇒ 인력개발과	공문
선 발			
근무경력 평가	9.1. ~ 9.16.	▸ 현 직급 경력, 총 재직경력, 市 근무경력 평가	
업무추진실적평가	9.1. ~ 9.16.	▸ 업무추진실적평가위원회(공개모집) ▸ 신청 대상자 업무추진실적 공개(행정포털)	
훈련계획서 평가	9.5. ~ 9.16.	▸ 분야별 전문가 지정, 서면 평가	
OPIc 시험	9.1. ~ 9.8.	▸ 희망자에 한함	
다면평가	9.5. ~ 9.16.	▸ 피평가자와 근무경험 있는 자로 구성	
심층면접	9.15. ~ 9.16.	▸ 외부 전문가(교수, 연구원 등) 원어민 교수 등 포함 평가단 별도 구성	
국외훈련심의회 심의·의결	9월 하순	▸ 국외훈련심의위원회	
선발결과 공개	9월 하순		
파견기관별 영상면접	10월	▸ 직무훈련 파견 기관별 별도 진행	
교 육 (파견예정자)			
선발 이후 파견 절차 안내	11월	▸ 선발자 설명회 개최	
국외훈련 선발자 교육	'23 상반기	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참여 (5급 이하)	
파 견			
훈련계획서 제출 등 파견요청	파견 1개월 전	▸ 지원자 소속부서 ⇒ 인력개발과	공문
국외훈련심의회 심의·의결	파견 2주 전	▸ 파견기간, 훈련기관, 훈련계획 등	
파견의뢰	파견예정일 2주 전	▸ 인력개발과 ⇒ 인사과	
파견명령	출국일 기준	▸ 인사과	

※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3

운영개요

3-1 선발인원

□ 인원 : 총 37명 ※ 3급 이상 4명 별도 선발 포함

○ 학위과정 : 10명(5급 5명, 6급 이하 5명)

○ 직무과정 : 27명(3급 이상 4, 4급 7명, 5급 이하 16명)

- 일반직무(4급 이상) : 11명(3급 4, 4급 7*)

* 학위과정으로 신청할 경우, 학위과정 신청자 우선 선발

- 지정기관직무(5급 이하) : 5명

- 특별정책(5급 이하) : 11명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3급이상	4급	5급	6급이하	비 고
'23년 계획	37	4	7	12	14	
학 위	10			5	5	
직 무	27	4	7	7	9	※ 3급 이상 4명 추후 별도 선발
일반직무	11	4	7 (학위 포함)	-		-3급 이상 : 직무과정만 선발 -4급 : 직무학위과정 모두 선발 ※ 단, 학위과정 선발자 우선 선발
특별정책	11	-	-	5	6	-5급 이하 ▶ 포틀랜드대(4), 버밍엄대(3), 싱가포르국립대(2), 대외경제무역대(2)
지정기관 직 무	5	-	-	2	3	-5급 이하 ▶ 샌프란시스코시청(미국), 요코하마 시청(일본), UCLG-ASPAC(인도네시아), ICLEI 본부(독일), UCLG-Africa(모로코)

✓ 직급.과정별 선발인원을 원칙으로 하되, 미달 시 직급.과정별 인원 조정

✓ 지정기관 직무과정 및 특별정책과정 공통사항

▶ 5급 이하 직급에 관계없이 선발하므로, 위 표의 직급별 선발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

▶ 훈련기관 요건 충족, 인터뷰 결과에 따라 선발자 최종 파견

▶ 특별정책과정과 지정기관직무 간 중복지원(1-3지방) 허용 ※ 학위과정은 제외

□ 일반자격

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1조 및 「서울시 국외훈련 운영규정」 제10조, 「국외훈련 업무처리지침」 등 요건
 - 7급 이상 경력직공무원으로 '22.12.31. 기준 만 50세 이하('72.1.1. 이후 출생자), 실제 근무경력 3년 이상 및 市 전입 2년 이상 연속 근무
 - ※ 선발과 파견이 동일년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전년도 말('71.1.1.이후 출생자) 기준
 - ※ 국장급은 만 53세 이하로 함('69.1.1. 이후 출생자)
 -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 기간 근무(의무복무)가 가능한 사람
 -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
 -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
 - 선발 연도 말 현재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
 - 6월 미만의 개인단기직무훈련을 이수한 경우 국외훈련 신청 마감일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(단체훈련 제외)
 -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(연구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)
 - 기타 선발 제한 사항
 - ✓ 공무원 3대 비리(음주운전, 성범죄, 금품·향응 수수) 징계처분 이력자(징계처분 기록말소자 포함)
 - ✓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자
 - ✓ 선발 연도 말 현재 6개월 이상 국내 교육훈련기관 장기교육훈련 중인 자*
 - * 행안부 지방자치인개발원, 통일교육원 등 장기교육과정, 서울시 인재개발원 미래인재 양성과정(국내·국제반) 등
 - ✓ 국내 대학(대학원) 위탁교육 훈련 중인 자(의무복무 중인 자 포함)는 장기국외훈련 학위과정 선발 제한
 - ✓ 국내·외 박사학위 또는 국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
□ 어학요건

어 권	어 학 성 적	공통
영 어 권	토플 IBT 75점, 서울대·한국외대·부산외대·LATT 어학검정 60점, IELTS 5.5점, 토익 700점, TEPS 600점(NEW TEPS 327점), TOSEL 640점, G-TELP(Level 2) 70점 이상	OPIc IML 이상
비영어권	서울대·한국외대·부산외대 어학검정 60점, 중국어 신HSK 5급(300점 만점) 180점 이상, 일본어 JLPT N2(180점 만점) 100점 이상 ※ 중국 '대외경제무역대학 특별정책과정(1년)'의 경우 토익 등 영어점수와 오픽 영어점수 합산으로 선발	

- ✓ 어학성적 사본 : 어학성적은 신청서 접수 시 충족, 접수기간 이후 제출(보완) 불인정
 - ▶ 토익 등 유효기간 : 선발 연도말('22.12.31.) 기준 **2년 이내**
 - ▶ OPIc 유효기간 : 선발 연도말('22.12.31.) 기준 **1년 이내**
- ✓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의 경우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훈련 일반요건에서 정한 어학점수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면제 가능

□ 어권별 훈련국

- 영 어 권 : 미국, 영국, 아일랜드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
- 비 영 어 권 : 일본, 중국, 싱가포르 등 아시아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기타 EU국가, 러시아, 아프리카, 중남미 등
- 특수 훈련지역 : 러시아, 중남미, 아프리카('23년 신규 지정)
 - ※ 특수지역 훈련비 지원 : 체재비 외 매월 훈련보조비 360달러 추가 지급
(근거 : 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」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)

< 선발 후 훈련계획 변경 불가사항 >

- ◆ 선발된 어권에서 타 어권으로 변경 불가
 - 비영어권에서 영어권으로, 영어권에서 비영어권으로 변경 불가
- ◆ 선발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변경 불가
- ◆ 미국 이외의 영어권 국가에서 미국으로 변경 불가하나,
 - 미국에서 영국 및 기타 국가로 변경은 가능
 - 영국에서 미국 이외의 기타 국가로 변경은 가능
- ◆ 훈련 유형 변경 불가
 - 직무훈련에서 학위과정으로, 학위과정에서 직무훈련으로 변경 불가

3-3

선발기준

-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
 - 시정기여도, 심층면접, 훈련계획, 어학성적, 다면평가 등을 고려 종합평가
- 시정책심, 기피·격무업무 추진 등 가산점 부여 가능 : 20점 이내
 - 단, 국외훈련심의회에서 평가(‘세부기준’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결정)
- 평가기준 및 배점 : 총 110점

시 정 기 여 도(30)		심 층 면 접	훈 련 계 획	어 학 점 수	다 면* 평 가	핵심·격무 업무추진 등	비 고
근무경력 (10)	업무추진실적 (20)						
10	20	15	15	30 ❖ 토익 등 : 15 ❖ OPIc : 15	-	20	

* 다면평가 배점은 없으나, 훈련대상자 적격여부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

3-4

파견기간

파견기간 : 2년 이내(영어권, 비영어권 동일)

- 학위과정(4급 이하) : 2년 이내
- 직무과정
 - 일반직무
 - ▶ 3급 이상 : 1년, 1년 연장 가능
 - ▶ 4급 : 2년
 - 특별정책(5급 이하) : 1년
 - 지정기관직무(5급 이하) : 2년 이내
 - ✓ 파견기간 종료 후 ‘추가연구 등을 위한 파견기간 연장 불가’
 - ✓ 최대 훈련기간 : 국외훈련 파견기간의 합이 4년 이내(횟수로 최대 2회)

학위과정

- 대 상 : 5급 ~ 7급
 - 국외훈련 미경험자 선발
 - 비영어권 국가 학위 신청자 우대 ※ 일본, 중국, 싱가포르는 비영어권 국가에서 제외
 - ▶ 비영어권 국가 내 제2외국어(독일어, 불어 등 현지어) 학위과정 : 우선 선발
 - ▶ 비영어권 국가 내 영어로 운영되는 학위과정 : 훈련국 다변화 가점 부여
 - 가점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
- 기 간 : 2년 이내 ※ 준비·정리기간, 어학기간 등 포함
 - 파견 시작일은 학위과정 오리엔테이션 일자를 기준으로 정하고, 파견 종료일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정하되
 - 준비 및 정리기간 30일(각 15일) 포함하여 파견기간을 정할 수 있음
- 훈련방법 :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훈련과제 완수
 - '23년 훈련과제 목록(총 99건) 중 훈련과제를 선택하여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
- 훈련기관
 - 영어권의 경우, 대학원 과정의 분야별 상위 70위권 이내
 - ※ U.S. News & World Report 등(미국), Guardian(영국) 순위 기준
 - ※ 기타 국가 :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근거로 훈련자가 직접 소명 및 인력개발과 승인 필요
 - 조건부 입학(pre-master 사전 이수조건 등) 불인정
- 훈련기관 인원
 - 동일 훈련기관 파견 인원 제한 : 3인 이내(직무·학위·특별정책과정 포함)
 - ※ 훈련기관 섭외시 인력개발과와 사전 협의 필요
 - '23년도 학위 파견 배제 기관
 - ▶ 특별정책과정 운영 : 미국 포틀랜드주립대, 영국 버밍엄대,
싱가포르국립대, 중국 대외경제무역대

- **훈 련 비** : USD 18,000 이내 / 1년(학자금)
 -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, 등록금 및 기타 의무적으로 지급이 필요한 비용으로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- **포기자 대비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예비자 선발**
 - 직급별(5급, 6급 이하) 예비자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, 파견인원의 1.5배 범위 내 예비자 선발
 - ※ 선발자 중 포기자 발생 시 직급별 예비자가 우선하되, 교차 가능
 - 본 선발자를 우선 파견하되, '23.5.31.까지 입학허가(admission) 미취득 시 예비 선발자에게도 동일한 기회 부여 → 입학허가를 먼저 취득한 자에게 파견 기회 부여

직 무 훈 련

① 일반 직무훈련

- **대 상** : 4급 이상 **※ 4급의 경우 학위과정 신청자 우선 선발**
 - 국외훈련 미경험자 선발 우대
- **기 간** : 2년 이내
 - 기준일 : 초청장에 명시된 소요 기간 기준 **※ 별도 준비기간 포함 2년 이내**
 - 국장급은 1년 원칙, 1년 이내 연장가능
 - 복귀 시기 : 정기 인사일정 고려 2년 기간 내에서 6.30. 또는 12.31.까지
- **훈련방법** : 현장 직무훈련(인턴십 등) 또는 연구소 프로그램 참여 등
- **훈련기관** : 연구과제와 관련된 해외정부·비영리단체·민간기업 또는 저명한 독립연구소나 대학부설연구소
 - 개인이 기관과 교섭, 비자 및 어드미션 취득
 - ※ 재외한국인이 운영하는 기관 또는 외국대학(원)의 한국학연구소 파견 불가
- **훈 련 비** : USD 9,000 이내 / 1년(기관부담금+세미나 비용+어학비 등)
 - 단, 예산의 범위 내에서 MOU상 명시된 금액 지원 가능
- **훈련기관 인원**
 - 동일 훈련기관 파견 인원 제한 : 3인 이내(직무·학위·특별정책과정 포함)

② 특별정책과정 훈련

- 대 상 : 5급 ~ 7급
 - 국외훈련 미경험자 우선 선발
- 기 간 : 1년 ※ '기간 연장'이나 '학위과정'으로의 변경 불가
- 파견시기 : '23. 7월 중 ※ 중국 '대외경제무역대학'의 경우 1월 중
- 훈련방법 : 어학, 전문과목, 필드트립, 실무수습 등 과정이수
- 훈련기관 : 4개소(미국, 영국, 싱가포르, 중국)

연번	국 가	훈련기관	기간 (인원)	훈련자격 및 조건 등
1	미 국	포틀랜드주립대 공공서비스센터 (공공행정)/ 사회복지대학원	1년 (4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프로그램 : 사전 어학과정, 강의, 세미나 참석, 현장실습 등 ▸ 공공서비스센터 2명, 사회복지대학원 2명 ▸ '23.7월 중 파견 예정
2	영 국	버밍엄대 사회과학대학원	1년 (3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등록 기간까지('23년 2월 말) IELTS 6.0 이상(분야별 5.5 이상) 취득 요망(입학요건) ▸ 프로그램 : 사전 어학과정, 학기당 2과목 강의, 현장실습, 세미나 참석, 보고서 제출 등 ▸ '23.7월 중 파견 예정
3	싱가포르	싱가포르국립대 리관유스쿨	1년 (2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등록 기간까지('23년 2월 말) 토익 750점 이상 및 토익스피킹 140 이상 취득 요망(입학요건) ▸ 프로그램 : 영어강의, 학기당 1과목 및 자율청강 1과목 세미나 참석, 현장실습, 유관기관 방문 등 ▸ '23.7월 중 파견 예정
4	중 국	대외경제무역대 국제학원	1년 (2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토익 등 영어점수와 오픽 영어점수 합산으로 선발 ▸ 프로그램 : 주 2회 강의(영어), 어학과정(중국어, 주 5회) 세미나 참석, 현장실습 등 ▸ 프로그램 : 영어강의, 학기당 1과목 및 자율청강 1과목 세미나 참석, 현장실습, 유관기관 방문 등 ▸ '23.1월 중 파견 예정

- 훈 련 비 : USD 20,000 이내 / 1년
 - 단, 예산의 범위 내에서 MOU 체결상의 금액 지원 가능

3 지정기관 직무훈련

- 대 상 : 5급 ~ 7급 ※ 영어 등 의사 소통 가능자(OPIc IM3 이상)
 - 국외훈련 경험자 지원 가능
- 기 간 : 2년 이내 ※ 준비·정리기간, 어학기간 등 포함
- 훈련방법 : 지정기관에서 인턴십 근무 등 현장직무훈련
- 훈련기관 : 市에서 지정·추천하는 국제기구·협회 본부·지역사무소, 외국 정부, 비영리재단 등에서 실제 근무
 - 샌프란시스코시청(미국), 요코하마시청(일본), ICLEI(독일), UCLG-ASPAC(인도네시아), UCLG-AFRICA(모로코) 등
- 훈 련 비 : USD 9,000 이내 / 1년(기관부담금+세미나 비용+어학비 등)
 - 단, 예산의 범위 내에서 MOU상 명시된 금액 지원 가능
- 선발 및 파견조건
 - 훈련기관이 요청한 자격조건 등에 따라 기관별 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훈련을 위한 체류 허가 및 비자취득 개인 교섭 필요
 - 市 선발 이후 훈련기관의 화상 면접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, 기관 수락 전까지는 선발 미확정임
 - 영상면접 전 또는 영상면접 합격 후 훈련기관 사정으로 훈련자 파견 수용 의사 철회 시 동일 국가 내 일반직무 훈련으로 변경하여 선발 자격 유지
 - 화상 면접 탈락 시 선발 취소 및 국외훈련 1회 수혜자 간주
 - 훈련기관과의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근무지 및 파견 시기 변동될 수 있음

< 지정기관 직무훈련 기관별 선발요건 >

◇ 서울시 선발 추천 후 파견기관 영상면접 후 최종 선정

연번	국가 (도시)	파견기관 · 기간	직급	지원자격, 역할 및 근무조건
1	미국 (샌프란시스코)	샌프란시스코시청 (2년)	5급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격 : 영어 의사 소통 가능자(말하기, 영문 서류 작성 능력), OPIc 영어 IM3 이상 ▶ 분야 : 도시행정(국제교류) ▶ 업무 : 서울-샌프란시스코 교류업무, 서울시정 홍보 및 샌프란시스코 우수정책 수집 등 ▶ 파견 : '23. 1월 이후~ (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2	일본 (요코하마)	요코하마시청 (2년)	5급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격 : 일본어 의사 소통 가능자(말하기, 일문 서류 작성 능력), OPIc 일본어 IM3 이상 ▶ 분야 : 도시행정(국제교류) ▶ 업무 : 서울-요코하마 교류업무, 서울시정 정보제공, 한국 관련 행사 지원 등 ▶ 파견 : '23. 9월 이후~ (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3	독일 (본)	ICLEI (2년) (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)	5급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격 : 영어 의사 소통 가능자(말하기, 영문 서류 작성 능력), OPIc 영어 IM3 이상 ▶ 분야 : 기후환경 분야 ▶ 업무 : 환경 관련 프로젝트, 도시 간 네트워킹 등 ▶ 파견 : '23. 4월 이후~ (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4	인도 네시아 (자카르타)	UCLG-ASPAC (2년) (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부)	5급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격 : 영어 의사 소통 가능자(말하기, 영문 서류 작성 능력), OPIc IM3 이상, 인도네시아어 회화가능자 우대 ▶ 분야 : 도시행정(국제교류) ▶ 업무 : 회원국 관리, 프로젝트 지원, 정책교류 등 ▶ 파견 : '23. 7월 이후~ (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5	모로코 (라바트)	UCLG-AFRICA (1+1년) (세계지방정부연합 아프리카 지부)	5급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격 : 영어 의사 소통 가능자(말하기, 영문 서류 작성 능력), OPIc 영어 IM3 이상, 불어 회화가능자 우대 ▶ 분야 : 도시행정(교육분야) ▶ 업무 : 아프리카 회원도시 대상 교육훈련(ALGA), 프로젝트 관리 및 평가, 교육프로그램 관리, e-learning 프로젝트 등 ▶ 파견 : '23. 1월 이후~ (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 ▶ 기타 : 체재비 외 매월 훈련보조비 360달러 추가 지급 (특수훈련지역)

※ 제2외국어 선발 우대 희망자는 증빙자료(어학성적 등) 제출 요망

4

세부계획

4-1

선발

① 훈련대상자 모집

- 모집기간 : '22. 8. 29.(월) ~ 8. 31.(수)(3일간)
- 대 상 : 선발 요건 충족자 중 국외훈련 희망자

《 중복지원 허용 》

- ◆ 훈련기관별 경쟁률 편차 및 지속적인 추가선발 문제 해소를 위해 '21년부터 실시
 - 중복지원 가능 : 지정기관직무와 특별정책과정 간(최대 3지방까지)
 - ※ 단, 학위과정은 제외

- 방 법 : 실·본부·국장 추천 ⇒ 인력개발과 제출(공문)
 - ※ 신청서 등 서명된 원본 및 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중 인력개발과 직접 제출
- 제출서류 : 신청 확인서 및 신청서, 훈련계획서, 업무추진실적 및 증빙자료, 인사기록요약서,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

연번	제출서류	세부내역	비고
1	훈련계획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학위과정 : '23년 훈련과제 목록(총 99건) 중 개인별 2개 선택하여 훈련계획서 제출(1~2과제) ▶ 지정직무기관 및 특별정책과정 : 1~3과제(복수 지방 시) ※ 복수지방 훈련국가 및 훈련기관에 맞게 작성 	한글파일 (신청서 포함)
2	업무추진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5년간 실적 기준(1매 작성) ※ 5급 이하의 경우 업무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증빙자료 별도 제출 	한글파일
3	인사기록요약서	e-인사마당에서 출력	PDF
4	어학성적 증명서 사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발 연도 말('22.12.31.) 기준, 토익 등 2년 내 / OPIc 1년 내 ('21.1.1. 이후 취득에 한함) ※ 접수기간 이후 제출된 어학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	PDF

2] 훈련자 평가

자격역량 검증(평가점수 반영)

근무경력 평가(10점) ※ 대상 : 4급 이하

○ 시 기 : '22. 9. 1.(목) ~ 9. 16.(금)

○ 평가자 : 인력개발과 담당자 및 팀장

○ 평가방법 : 인사시스템 근무경력 확인

- 현 직급 경력 점수(4점)

- 총 재직경력(2점) 및 시 근무경력(4점) 점수 경력에 따라 차등 부여

✓ 제외기간(재직경력) : 휴직(육아, 유학 등), 6개월 이상 국내외 장기교육 및 장기병가, 교류(민간기업 임시채용 등), 군 입대기간

✓ 제외기간(시 근무경력) : 휴직(육아, 유학 등), 6개월 이상 국내외 장기교육 및 장기병가, 교류(민간기업 임시채용 등), 군 입대기간, 국가기관 및 자치구 파견기간

업무추진실적 평가(20점) ※대상 : 5급 이하

○ 시 기 : '22. 9. 1.(목) ~ 9. 16.(금) 기간 중 1일

○ 평가방법 :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별도 모집(공개모집 예정)

- 실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공무원 중 직급별·직렬별로 적정 배분

- 5급 이하 7명 내외로 구성하여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화

- 업무추진실적 증빙자료를 통한 업무추진실적 확인

※ 4급은 BSC 평가로 업무추진실적 평가 대체

훈련계획서 평가(15점) ※대상 : 4급 이하

○ 시 기 : '21. 9. 5.(월) ~ 9. 16.(금)

○ 평가자 및 평가방법 : 분야별 전문가 / 서면평가

- 훈련신청자 1명당 2명의 평가위원이 제출한 점수를 합산·산술평균

어학성적 평가(30점) ※대상 : 4급 이하

○ 외국어 말하기(OPIc) 시험 평가일시(희망자) : '22. 9. 1.(목) ~ 9. 8.(목)

○ **평가방법**

- 유효기간 내 어학성적 제출 및 환산점수 반영
- 총 30점 : 토익·토플 등 15점 + 오픽(OPIc) 15점

○ **OPIc 시험 평가점수 개선(환산점수 세분화)**

구분(영어)	환산점수		비고
	변경 전	변경 후	
Advanced(고급) Low(AL)	15점	15점	
Intermediate(중급) High(IH)		14점	
Intermediate(중급) Mid3(IM3)	14점	13점	지정기관직무 선발 요건
Intermediate(중급) Mid2(IM2)	13점	12점	
Intermediate(중급) Mid1(IM1)	12점	11점(신청 하한요건)	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선발 요건('20~, IM1 이상) 반영
Intermediate(중급) Low(IL)	10점	신청 제한	
Novice(초급) High(NH)	8점		
Novice(초급) Mid(NM)	6점		
Novice(초급) Low(NL)	5점		

전문가 심층면접(15점) ※대상 : 4급 이하

○ 시기 및 장소 : '22. 9. 15.(목) ~ 9. 16.(금), 장소 미정

○ 평가자 : 외부전문가(교수, 연구원, 원어민 등) 포함 면접관 3인

《 원어민 참여 영어면접 확대 실시, 5급 이하 》

- ◆ 목적 : 장기국외훈련에 필요한 어학능력(의사소통 능력) 평가
- ◆ 방안 : '21년 지정기관직무에 한정하여 실시한 '원어민 심층(영어) 면접' 을 '22년 학위과정 및 특별정책과정으로 확대 실시

○ **평가방법 : 1인당 30분 내외 개별면접**

- 조직발전 기여도 및 개인역량에 대한 종합적 평가
- 훈련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 편성(1개 조당 4~6명) 및 평가

적격여부 검증(평가점수 미반영)

□ 다면평가

- 시 기 : '22. 9. 5.(월) ~ 9. 16.(금)
- 평 가 자 : 피평가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
 - 피평가자와 동일부서 근무경험자로 무작위 선별(현 소속부서 포함)
 - 훈련대상자 1인당 20명의 평가단 추출(상급자 6, 동급자 8, 하급자 6)
- 평가방법 : On-Line 평가(행정포털 e-인사마당)

□ 업무추진실적 검증

- 시 기 : '22. 9. 1.(목) ~ 9. 16.(금)
- 검증방법 : 행정포털 공개 및 의견 접수, 업무추진실적 증빙자료 대사

□ 훈련자 선발

- 시기 및 선발 결정 : '22. 9월 하순,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- 심의내용
 - 심의위원회 개최 시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기준 확정
 - 기본 평가점수를 기초로 하되, 시정 핵심·격무업무 추진, 다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발

《 격무·기피부서 현황, '22.1월 기준 》

- ◆ 예산담당관, 장애인복지정책과, 감염병관리과, 버스정책과, 기후변화대응과, 일자리정책과, 소상공인정책담당관, 주거재생과, 공공주택과

- '23년 선발인원 : 총 37명(본선발 33, 예비 7명 이내) ※ 3급 이상(4명) 별도 선발

*학위 4명 이내, 일반직무 1, 특별정책 1, 지정기관 1

(단위 : 명)

과정명		선발인원	예비자	
계		33	7명 이내	
학위	5급	5	2명 이내	선발자 중 포기자 발생 시 직급별 예비자가 우선하되, 교차 가능
	6급 이하	5	2명 이내	
직무	일반직무(4급 이상)	7	1	
	특별정책(5급 이하)	11	1	
	지정기관직무(5급 이하)	5	1	

4-2 파 견

- 시 기 : '23. 1. 1. ~ '23. 12. 31.
 - 기관 및 개인별 국외훈련 일정 고려하되, 최대한 인사발령 시기에 맞춰 파견
- 파견결정 :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 -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훈련계획서 파견 1개월 前까지 제출
- 심의내용 : 훈련계획의 적정성 및 훈련 효과성 검토, 파견 결정
 - 실질적인 직무훈련 가능성 및 사무공간 확보 여부, 실제 근무 내용 등
 - 훈련 기간 내 과제 수행 여부, 수행 방법 등 적정성
 - 적정한 현지 체류 허가 및 VISA 취득 계획 확인
 - 동일 기관(직무·학위·특별정책과정 포함 3인 이내) 파견 인원 등

4-3 훈련관리

① 복무관리 - 훈련상황 보고, 품위유지·성실의무 등 지침 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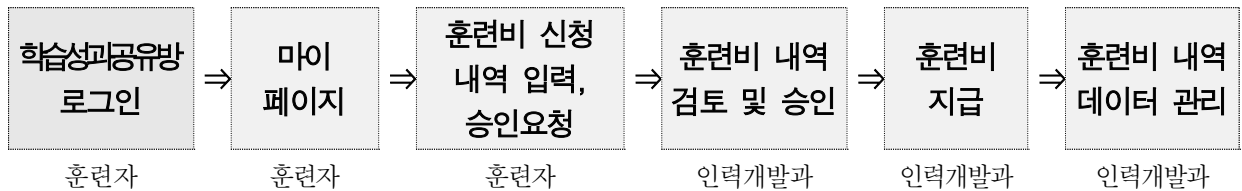
- 훈 련 중 : 수시 및 정기 훈련상황 점검
 - 학습관리시스템 내 학습성과 공유방을 통한 과제 제출 이행여부 점검
 - ▷ 주요 보고서 제출시기와 분기별 체재비 지급시기 연계 강화
- ▶ 훈련상황보고서(분기별) : 3·6·9·12월 10일까지 ※ 학위는 학기별
 - ▶ 연구과제보고서(연 1회) : (1차) 파견시점에 따라 6.30 또는 12.31까지
(2차) 파견 복귀 3개월 前까지
- 훈 련 후 : 의무복무 이행, 타기관 전출 제한 등
 - 훈련 종료 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로 귀국이 지연될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해 사전 승인(지연귀국 금지)
 - ※ 파견기간 전 미리 출국의 경우도 사전 승인 필요(출국일=파견 시작일, 조기출국 금지)
 - 의무복무 이행 : 장기국외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
 - 유관부서 근무 : 훈련 종료 후 훈련분야 유관부서 배치, 훈련기간의 최대 2배 기간 동안 훈련분야 유관부서 근무
 - 타 기관 전출 제한 : 국외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기간 중 전출 제한
 - ※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4조(의무복무)

2] 보고·정보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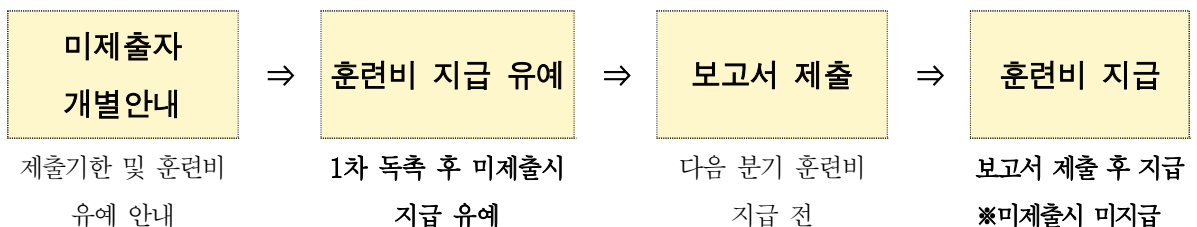
- 정기보고서 작성 내용·형식 다양화로 시정활용도 제고
 - 해외정부 우수정책, 세미나 참여, 과목 수강 내용 등을 포함
-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주기적 시정 자료 제공
 - 시정 우수사례 특강 자료 및 시정 보도사항 학습공유방 게재 등

3] 훈련비 신청 및 관리

- 훈련비 신청 : 학자금, 세미나 비용 등
 - 학습성과 공유방(<http://abroad.seoul.go.kr>)을 통해 신청
- 훈련비 지급내역 관리 : 학습성과공유방에 입력 및 DB화



- 훈련 중 ‘보고서 미제출자’에 대한 훈련비(체재비) 지급 제한



4] 훈련비 해외송금 수수료 지원

- 훈련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해외송금수수료(건당 약 \$20)를 사후 정산하여 지급
- 지급방법 : 국외훈련자 복귀 후 정산 시 일괄 지급
 - 훈련자가 수수료 발생내역 증빙서류(수취 영수증, 통장내역 등) 제출
 - 인력개발과는 송금내역과 증빙서류 대조 후 수수료금액 산정지급

① 과정 평가

- 대 상 : 훈련자 전원
- 내 용 : 훈련상황보고서 점검(수시) 및 훈련실태 점검(반기)
 -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이행 여부 점검(수시) 및 체재비 지급 연계
 - ‘연구과제 보고서’ 표절검사 및 대시민 공개
- ✓ 대상 : '21년 이후 기 파견자 소급 적용 및 '23년 신규 파견자
- ※ 훈련 중 제출 보고서, 제출시기 및 분량

보고서명	제출시기	분량
①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서	파견 후 3월 이내 (훈련 중 1회)	5쪽 이상 (13 point, 줄 간격 160%)
②훈련진행 상황보고서	* 학위과정 : 매학기 종료 후 * 직무과정 : 분기별 1회	
③연구과제 보고서 (표절 검사 실시 및 대시민 공개) ※표절 허용률 : 15% 미만	연 1회	30쪽 이상 (13 point, 줄 간격 160%)
④시정반영 우수정책 사례	* 학위과정(2년) : 8회 * 일반직무과정(2년) : 20회 * 지정기관직무 : 분기별 1회	3쪽 이상 (13 point, 줄 간격 160%)
⑤훈련성과 보고서 (표절검사 실시 및 대시민 공개) ※표절 허용률 : 15% 미만	훈련 복귀 전	50쪽 이상 (13 point, 줄 간격 160%)

- 상·하반기 훈련기관 지도교수, 감독관 등에게 공식서한을 통해 수업결석, 무단결근 등 훈련실태 점검 실시
- 결과조치 : 평가결과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 보고
 - 훈련성과 미흡 자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사 의결 후 중도복귀 등 조치

《 훈련실태 점검 결과 조치사항 》

- ◆ (최초 적발) 수업 결석,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한 훈련 불성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경고 조치
- ◆ (2회 적발) 관련 기관 최종 의견 수렴 후 훈련부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분기 훈련비 미지급
- ◆ (3회 적발) 국외훈련심의회 심의·의결 후 중도복귀 조치

2] 성과 평가

- 대 상 : 국외훈련 이수자 전원(훈련종료 후 평가)
- 시 기 : 반기별(총 2회)
- 내 용 : 훈련성과 보고서 및 학위취득 여부 등
- 평가방법 : 분야별 전문가 평가(1건당 2인 외부 평가위원) 및 국외훈련심의위원회 보고
- 평가기준 및 방식
 - 기 준 : 제출시기, 활용 가능성, 충실도, 타 논문과의 유사도 등
 - 방 식 : 개인별 점수에 따라 「탁월, 우수, 보통, 미흡」으로 평가
- 결과조치 : 평가결과 미흡 시 보고서 보완 등 조치
 - 보고서 부실 및 당초 훈련과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작성 요구
 - 1·2차 보완 후 재평가 결과 ‘미흡’ 시 패널티 부과

《 훈련성과 보고서 등 관련 훈련비 환수 기준 》

◆ 훈련성과 보고서 미제출

- ▶ 훈련복귀 전 훈련성과 보고서 미제출 : 기 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
- ▶ 파견 종료 후 6개월 경과 : 기 지급된 총 훈련비의 10% 환수
- ▶ 파견 종료 후 1년 : 기 지급된 총 훈련비의 10% 추가 환수

◆ 훈련성과 보고서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·논문 등을 표절

- ▶ 기 지급된 월 체재비의 2배 환수

◆ 학위훈련비 10% 환수 : 훈련성과 보고서 작성 미흡(평가점수 60점 미만)

- ▶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시 1·2차 보완경고 후 패널티 부과

◆ 직무훈련비 50% 환수 : 훈련성과 보고서 작성 미흡(평가점수 60점 미만)

- ▶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시 1·2차 보완경고 후 패널티 부과

◆ 학위훈련비 50%내 차등 환수 : 학위 미취득

- ▶ 이수과목 부족(F학점 포함) : 50%
- ▶ 학점미달 : 40%
- ▶ 논문 미제출 : 훈련 복귀 후 2학기 이내에 미취득시 30%

※ 훈련비는 국제화여비(체재비 등) 및 사무관리비(학자금)를 포함

1 **훈련성과보고회 개최**

- 일 시 : '22. 12월(예정)
- 대 상 : '19. 7월 ~ '22. 6월 복귀자 전원 및 관심있는 직원 등
- 내 용 : 영상물 상영, 훈련성과 발표, 성과물 전시-공유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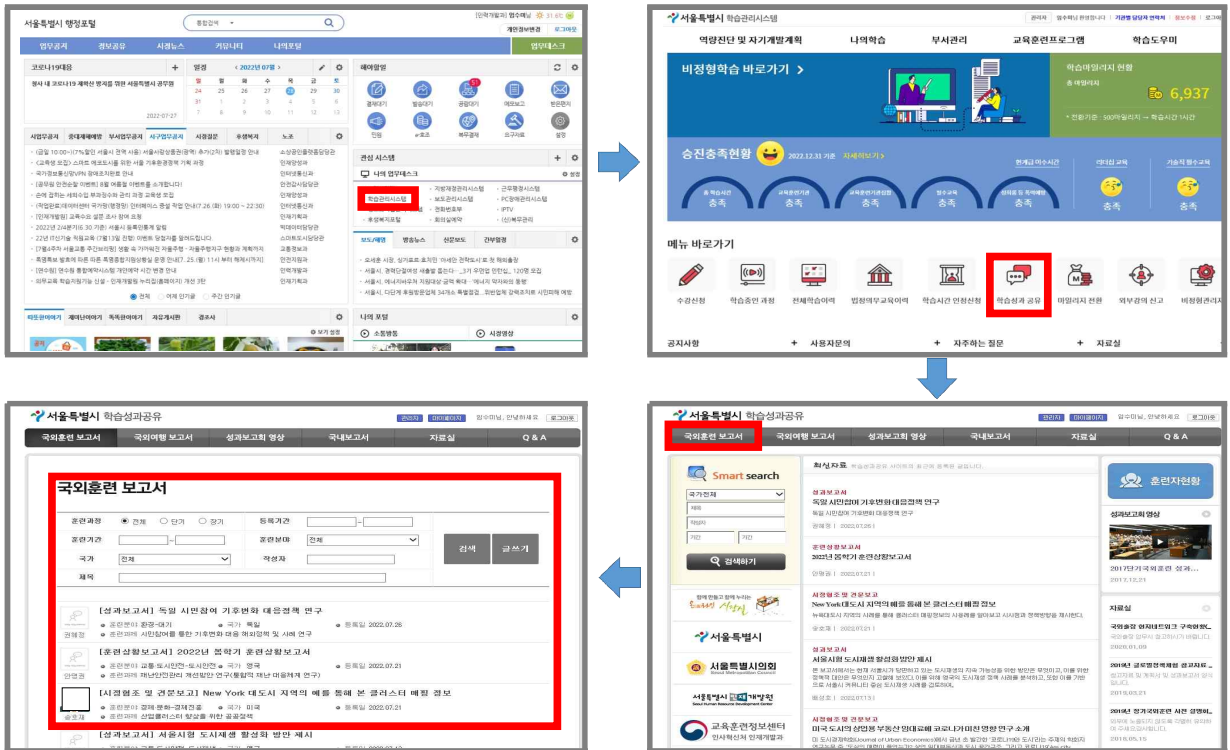
2 **훈련자 강사 활용**

- 대 상 : 훈련자 전원
- 방 법 : 인재개발원 또는 관련 부서 OJT
 - 5급 이상 :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과정에서 강사 활용
 - 6급 이하 : 훈련과제 관련 부서의 실무직원 대상 OJT로 운영

3 **학습성과공유 시스템 운영**

- 국외훈련자 보고서 학습 관리시스템 등록·활용

※ 학습성과공유방 접속방법 : [행정포털] - [학습관리시스템] - [학습성과공유]



- 훈련성과 보고서 외부 공개

- 서울정보소통광장(<http://opengov.seoul.go.kr/>)

5

행정사항

5-1

'22 예산 : 3,649백만원

- 훈 련 비
 - 한도액 초과분은 자비 부담
- 체 재 비 : 국외훈련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급
- 항 공 료 :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의해 지급
 - 본인, 배우자 및 자녀(만 26세 미만 미혼자녀)의 왕복 항공료
 - ※ 동반가족의 경우 파견기간의 1/2 이상 동거할 경우에 한함
 - 항공운임 : 본인(1~3급 국장급 포함) 및 동반가족은 모두 이코노미 적용
- 기타 운영비, 훈련계획서·훈련과제 등 평가 및 심층면접 수당 등

5-2

부서 협조

- 실·본부·국 : 국외훈련 대상자 추천
- 인 사 과
 - 국외훈련 신청자 대상 다면평가 실시
 - 국외훈련 신청자 징계처분 내역 조회
 - 국외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기간 중 전출 제한 등 시행
- 평가담당관
 - 4급 이상 국외훈련 신청자 BSC 점수 통보 협조
- 인재개발원 : 훈련이수자 중 5급 이상자 훈련분야 관련 집합교육 강사 활용

붙임 : '23 국외훈련 운영계획 참고자료 1부. 끝.